

제439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8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7)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6.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

상정된 안건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 2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2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7) 2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2
6.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
..... 2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측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우리 체육관광과 관련된 법안 심사에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중요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야 잘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경주시의 김석기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소위원장으로서 저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할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들 심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7)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6.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

(14시06분)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 개정안은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우리말 용어인 기반시설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이후에 제47조의8제2항제3호에도 인프라라는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

문에 다음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중에서도 제47조의8제2항제3호도 추가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도 동일 취지의 문학진흥법과 음악산업진흥법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관광진흥법의 용어 정비를 통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취지에 공감하고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도 동일하게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공포 후 시행 전인 조문에 인프라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마련한 바 수정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잘 알겠습니다.

소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김승수 위원님, 저희들 소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했는데요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조계원 의원안은 지자체의 운동경기부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조은희 의원안은 체육단체 등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기현 의원안은 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요구기간을 단축하고 있고 진종오 의원안은 윤리센터 등이 조사를 개시한 경우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계원 의원안을 제외한 3건의 개정안은 작년 12월에 한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으며 소위에서 조은희 의원안은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공정위원회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또 이기현 의원안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진종오 의원안은 IOC의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방침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계원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서 직장체육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자료 표를 보시면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16곳 중 6곳에서, 기초지자체 192곳 중 8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동경기부 관련 사항에 별도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 등은 운동경기부의 운영계획, 채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장 1명 및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되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장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동경기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로 만약 이 개정안 내용이 반영될 경우에는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공공기관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계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의무 부여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대상인 직장을 명확히 하고 포괄 위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일부 조문을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수정안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발의했으니까요.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그러시겠지요.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조례가 필요한 직장과 아닌 직장이 그 종목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직장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 실익이 뭔지 정부 입장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법상으로는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반 이하가 아직, 그러니까 광역은 6개, 기초는 192개 중에 80개, 절반 이

하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 다른 겁니다.

○**노종면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냥 우리한테 맡겨 주라 이런 데도 있는 거고 또 국가가 통일성 있게 운영해 주는 걸 찬성하는 곳도 있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입법적으로 판단할 때 기준은 명확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미 현행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단체나 지자체는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규정하려는 지자체 조례 대상 직장이 그 기관 또는 지자체겠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이미 뒀는데 그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부를 안 두는 지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안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지금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지 강제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같은 취지로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법에서 정한 데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때 당연히 그 운영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다음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자체가 일정한 기준 이상이면 두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경기부를 두는 지자체 또는 단체는 조례로써 그런 세세한 기준들을 두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는 것인데 거기서 또 대통령령으로 직장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저는 2단계 기준을 두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 해당 직장에 대한 기준이 일정 인원 이상, 직원 수 이상의 단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라고 규정을 해 놔는데 거기에다가 또 조례를 만들 거면 그중에서도 또 직장을 고르겠다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이 되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례로 규율하게 되면 행안부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고 해서, 또 어느 지자체는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통일성 있게 규율을 하게 해서…… 또 여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2항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통일성 있게 규율하게 하는 것이……

○**노종면 위원**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해도 통일성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규정을 두는 거니까 이래도 통일성, 저래도 통일성은 맞는데 그 2단계 기준을 두는 실익이 있느냐를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정의견을 내신 전문위원께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 볼게요. 어떤 의미로 이 2단계 기준을, 체계를 뒤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일** 지금 조계원 의원님 안의 취지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말씀드렸듯이 광역은 16개가 있고 기초가 19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

고 어떤 지자체는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원 의원님 안은 왜 어떤 데는 조례로 하고 어떤 데는 지침으로 하느냐, 조례로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더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지침이나 규정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다 조례를 제정해서 통일성 있게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 법령상 기준과 지금 조례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인 건데요. 조례이기 때문에, 원래 직장운동경기부는 민간도 둘 수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둘 수 있는데 민간 부분이 아닌 원래 법상 10조 4항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상은 이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지금 10조가 지자체하고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원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보시면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이고 4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에서 개정 의견을 낸 건 원래 원법에 있는 4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자체를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앞에다가 지자체를 명시해서 넣으면서 공공기관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정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우선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실게요.

○김승수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사실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규정을 두는 이유가, 실익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공공기관·지자체에 직장운동부를 두는 경우에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나 뭐 지원하고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단체운영비 지원하고요.

○김승수 위원 얼마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연간 약 9000만 원……

○김승수 위원 단체별로 하나요, 아니면 종목별로 하나요?

○소위원장 조은희 체육국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연간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창단하는 곳에 지원하는 게 있고 운영하는 곳에는 지금 차관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연간 9000만 원 이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이나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있건 조례가 없건 직장운동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지침으로 하고 있고 어디는 조례로 하고 있고……

○김승수 위원 민간기업에 직장운동부가 있는 경우에 어떤 규율을 강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직장운동팀을 운영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게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해라, 표준계약서를 써라 이런 규정이 있느냐 그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표준계약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하고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이게 지역에서 꼭 국가를 대신해서 해야 될 국가위임사무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기본 경비적으로 예산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그러면 이런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하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특히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정안에서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대신하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체육과 관련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럴 텐데 직장운동부……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의 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

○김승수 위원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이라 그럴까 크게 실익이 없는 사족 같은 그런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김석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계원 위원님 하십시오.

○김석기 위원 만약에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할 경우에 여기 보면 ‘공공기관 등에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위원회 구성이 ‘인권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인권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지,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또 여러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인권전문가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8페이지 6항……

○조계원 위원 6항 인권전문가 말하는 거군요.

일단 이 법안의 취지는 아까 공공기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으로 명문화해서 용어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관련해서는 조례 위임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하자, 그래서 선수단의 구성·자격·고용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이정문 위원님 하실 말씀, 인사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첫날이라 다

돌아가면서 인사했습니다.

○이정문 위원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최한 토론회 때문에 부득이 늦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결국 조례로 하느냐 아니면 지침으로 하느냐는 결국 지방의회가 관여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같은데 이렇게 직장운동부를 설치함에 있어서 시의회든 도의회든 구의회든 그런 것의 의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한다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직장운동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할 때, 행정지침으로 할 때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지침으로 할 때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다수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를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 우려스럽기는 한 데……

○소위원장 조은희 차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솔직히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침으로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대표기관인 국회의 나름의 통제와 견제 이런 것을 받듯이 지방에서도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관심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하는, 또 어느 지자체장에 따라서는 막 마음대로 하는 부분을 견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진선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선미 위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이미 다 논의가 된 내용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지금 의견이 엇갈려서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로 대별해서 볼 때 지자체는 조례로 운영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어떤 입장이요? 공공기관에 관한 것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이라든가? 제가 자꾸 이원화를 얘기하는 게, 이게 직장 속에서도 이원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이걸 제대로 검토했는지……

○소위원장 조은희 체육국장님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지자체의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고 국가와 관련된 중앙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지자체와 관련한 공공기관은 조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서 조계원 의원님 개정안에 수용을 한 것입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기관(전체 의무대상기관 82개)로 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지방공공기관이에요, 이 82개가?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다 지방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다 조례를 뒤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일단 중앙은 아니고 그 사항 자체가 지자체와 지방과 관련된 공공기관……

○**노종면 위원** 그게 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디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보여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원래 법 10조 2항에 보면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되고 3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이걸 위해서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4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달력이 확 안 오는데 명확하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내가 지적했던 것하고 약간 비슷한데, 일단은 직장경기부가 순수한 민간기업의 직장경기부가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직장경기부가 있고 국가 산하기관의 직장경기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 직장운동부가 몇 개 있고 대구시 혁신 단지에 와 있는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또 있는데 대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의 범위가 그러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만 적용이 되고 대구시의 민간기업이나 중앙공공기관, 가스공사 직장운동부는 적용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혼선이 생긴 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문체부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 준비가 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뭘지는 정확히 저도 알겠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실무진에서 확인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기들 자체 직장운동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조례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전체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법안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이정문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세 분의 의무화 필요성에 아직 정부 측의 답변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 같고 노종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기관의 의견 조사 여부 이것이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질문을 추가해서 하고 싶은데, 12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다섯 군데로 크게 대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운영 주체가 이렇게 다름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떤 게 다르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것을 통일, 균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어차피 논의하는 거면 다른 논의를 하고 있다가 그쪽을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준비되고 나면 할까요?

○**진선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저도 질문할 게 있는데 제 질문까지 다 하고 나서 또 다른 사항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들에서 이견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부처 수정의견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대구시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중복 자문기관 설치 금지 조항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구요. 대전은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와 같이 유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5항 단서를 보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만 예외를 두고 있어서 지자체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예외 단서 조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기구가 있는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차관님이나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서는 대구시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저촉 우려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행안부에 의견을 구한 바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심의사항 범위에 관해서 개정안의 5항 제2호를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에 체육지도자와 선수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보수 책정을 규정했는데 채용이나 재계약, 보수의 책정은 원래 임명권자인 단체장의 인사 및 계약에 관한 권한이 아닌지, 이 부분은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봤는지. 그리고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채용과 재계약은 모두 시장 권한이고 급여와 수당 기준까지는 심사하지만 개별 지급액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검토하거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한 흔적이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해 보시고 다른 항을 심의할 동안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음으로 가시지요.

○전문위원 김영일 다음은 소위자료 13페이지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체육단체의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요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6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현재 각 체육단체 등에서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든지 법제상벌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의 징계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징계의 기준, 방법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각 단체의 자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조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의 구성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체육단

체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명칭이 다양하므로 제18조의8제2항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징계 등 조치의 방법, 기준 등은 각 단체에서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조은희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진선미 위원 법안을 내셨으니까……

○소위원장 조은희 저는 문체부 수정의견대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정문 위원 이정문 위원입니다.

저도 조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수정의견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징계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사실 징계위원회 비고란에 보면 ‘성격을 갖는 다양한 위원회’, 예를 들어 스포츠공정위원회라든지 법제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명칭은 또 그런 이름으로 쓰더라도 어쨌든 징계의 기능을 하면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수정의견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다만 그 구성을 외부인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 밑에 3항을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사실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구성과 관련해서 또 위원회에 누구를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이것을 빼야겠다는 게 좀 적절한지는 의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 의견은 보통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각자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징계에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든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해야 된다는 이게 중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더라도 나머지는 원래 인사규정에 따라서 하던 대로 자율성 있게 두는 게 맞겠다는 게 저희 의견인 겁니다.

회피나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전까지 하던 대로 자체 규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정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대한체육회의 현 종목 단체 규정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다 법에서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차관님, 이 법에 일단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문체부장관이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은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징계를 해야 하는데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만다 지금 이 규정이 없는 거 아

니예요? 국민체육진흥법 내용 안에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징계위원회에 그것은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상 규정이 있나요, 징계위원회에? 그러니까 명칭도 지금 각각 다른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없기 때문에 각자 단체의 규정에 따라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입법상의 미비 아니냐. 만약에 여기 내용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징계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이 2분의 1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징계하도록만 돼 있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좀 미비돼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을 2분의 1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법상만 가지고는 논리상으로 문맥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셀프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을 해서 뚝뚝뚝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 구성을 두도록 한 겁니다.

현재는 보면 대한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임원과 선수, 지도자 징계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체육단체에 징계위원회를 뒀야 한다는 규정이 부재해요. 그래서 직원 징계는 각 단체 인사위원회가 자체 처리하니까 그 사이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부적절한 징계 경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명칭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문체부가 하는 대로 가도 되는 건지 그 말씀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답변 준비하실 때 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려 보겠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수정의견이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지적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2항의 수정 전단을 보면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가 이 규정대로라면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 의무화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설기구로서의 징계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안을 받았을 때 그때그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별 자체가 안 돼 있지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미 징계위원회로서 기능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조직들을 다 포섭하기 위해서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이걸로 포섭이 되냐고요. 이것은 문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문장 구성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2항 수정의견을 유지하면 그 위에 ‘징계 심의·의결의 기능을 하는 기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등도 동일하게 외부인사 2분의 1 이상 해야 된다’, 이것을 넣어야 명확해지는 거지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수정의견으로 나오

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체계화하고 이래서 심사소위가 돌아가야지 여기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수정의견은 국회에서 제안한……

○**소위원장 조은희** 진선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수정의견은 국회에서 아마 제안을 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큰 문제로 잘 못 느끼겠는데요.

○**김승수 위원** 지금 기존에 징계위원회를 뒤편에 두는 거 하고 이게 입법적으로 없었던 것을 보완하고 그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넣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또 아까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각각의 다른 명칭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인과관계가 되는 것이냐, 그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법 조항에 들어간 내용도 보면 선후 관계가 좀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거지요.

○**진선미 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낸 것은 지금 개정안에는 아예 명칭을 ‘징계위원회’라고 정한 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다른 단체에서 이 징계위원회라는 게 징계라는 그것을 딱 단정하기 그러니까 이름들을 조금 더 순화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상벌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여기는 위원회라고만 하고 이 법 안에서 밑에 규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이하에서는 징계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그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 수정의견의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진 징계위원회성 위원회에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조은희** 잠깐, 전문위원님이 좀 답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

○**전문위원 김영일**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스포츠공정위원회나 법제상벌위원회 이런 다양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표현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표현을 했고요. 괄호 열고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라고 한 것은 밑에 이 위원회를 이후에 규정들이 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저희가 약칭이라는 표현으로 이 법에서만 약칭으로 쓸 뿐이지 다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그러면 징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징계위원회는 이 법에서 지칭하기 위한 약칭일 뿐이고 나머지 스포츠공정위원회나 법제상벌위원회는 당연히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에 포섭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김승수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 취지에는 십분 동의합니다. 법문을 구성할 때 이러한 비고를 안 보고도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문제 지적이었고요.

○소위원장 조은희 좋은 의견이세요.

○노종면 위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거 설명 안 해 주면 누가 알겠냐는 거지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제안해 보면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여기를 그냥 ‘징계’를 빼고 ‘위 위원회’, 그냥 ‘위원회’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조 안에서 유일하게 쓰여지는 것은 밑에 3항에 ‘징계위원회’라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밑에 18조의9 3항. 그러니까 ‘위 위원회’라든가 그냥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게 해석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예. 다만 말씀하신 그 3항은 저희 수정의견에서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개정안과 같음으로 돼 있는데요?

○조계원 위원 3항은 문체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삭제했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13항.

○전문위원 김영일 아, 13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구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자구 정리를 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13항에 유일하게 ‘징계위원회’라는 말이 써 있어요. 아마 그래서 더 혼선이 있으셨을……

○전문위원 김영일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이 법안은 진선미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보완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꼭 제 제안이라고 그렇게 쓰면 또 책임이 저한테 오는데……

동의합니다.

○노종면 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거지요?

○진선미 위원 예, ‘위 위원회’.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시지요.

○이정문 위원 그런데 아까 노종면 위원께서 질문하신 다음 답변이……

그러면 기존에 구성됐던, 다른 명칭을 갖던 위원회도 이 법이 시행되면 바로 2분의 1 이상으로 위원 개임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저희는 진선미 위원님께 100% 동의하는, 똑같은 뜻입니다.

○진선미 위원 제발 제 이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조은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계원 의원님의 법안은 준비가 되셨어요?

○조계원 위원 아니, 좀 전의 것. 이게 바로 개임을 해야 되면…… 이게 바로 시행인가

요, 아니면 부칙에 기간을 두고 위원회를……

○전문위원 김영일 공포 후 6개월 지나서……

○조계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일 부칙에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문체부가 준비되셨으면 돌아가고 아니면 다음 항으로 가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기에는 부칙이 없는데……

○전문위원 김영일 부칙은 저희가 규정에는 안 넣었는데 지금 부칙은 6개월 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적용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징계요구를 받은 후부터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6개월은 좀 긴 것 아닙니까? 좋은 취지인데 6개월은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사람을 해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교체하고 이렇게 추가만 하면 안 되는 건가?

○김승수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하여튼 다른 법령,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정관이라든지 스포츠평정위 이런 부분들하고…… 인사위원회나 또 스포츠평정위의 역할, 기능이 훨씬 광범위하잖아요, 징계 말고도. 이런 부분하고 법률상의 체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어떤 식으로 문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영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4항의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일 다음 이기현 의원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이기현 의원안은 체육단체가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조치요구 등을 받고 조치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현재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60일로 단축하고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치요구와 보완요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한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한편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심사 시에 이게 이중처벌 여부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조치·보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의 결과보고기간과 관련해서 이기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체육단체의 조치·보완 결과의 보고기간을 단축

하도록 한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어쨌든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체부에서 제재조치를 요구해도 안 하는 경우가, 협단체의 굉장히 실세 이런 쪽에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협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줄이거나 또 패널티를 줄 경우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전혀 실질적인 피해가 없이 협단체 자체에 속하는 운동선수들이나 또 코치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대책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제때 기한 내에 안 하는 데가 더 많고 등등 그런 게 너무 심해서 과태료 부과조항도 두고 기간도 좀 더…… 이게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좀 더 당기게, 더 적시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만, 단체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도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무시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있는 협회장이나 아니면 거기 위의 실세, 여기에 신분상의 아니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하면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있고 빨리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협회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본인들한테는 피해가, 오히려 보면 제재를 받는 사람은 피해가 하나도 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그래도 그런 일이 단체 내에서 벌어지게 되면 그 단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협회장이나 임원들이 그 속에서 계속 잔류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겁니다.

○이정문 위원 궁금한 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체육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 단체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은 단체로 돼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단체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이정문 위원 그러면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대로 단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 해에 지급되는 돈을 쓰겠지.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을 따르지 않는 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양벌로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단은 단체장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저희들은 단체를 압박하는 아무런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또 단체장인지 임원인지 또 잘못이 있는 자가 누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 받는 건 단체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에게 부과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도가 생기면 그 조직 내에서 이 규정에 입각해서 회장이든 임원이든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에도 다 이사회나 총회 이런 게 구성이 돼 있

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이중처벌에 대한 지적이 이전 소위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 18조의9 11항,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이 조치는 어떤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게 1000만 원보다 적은가요,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폭이? 아니면 절차가 까다롭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제한조치도 저희는 충분히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체육단체에 다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제한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고 과태료는 모든 단체한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임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같은 경우는 체육회 내부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6월부터는 아예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는 그 해당되는 단체가 아니라 한 단계씩 상향해서…… 예를 들어서 종목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1심부터 진행하도록 해서 솜방망이 처벌, 자기 스스로 처벌하는 부분들은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거기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조치 요구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협단체장이 나중에 연임하거나 스포츠평정위 심사받을 때 페널티나 그런 부분이 지금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연임 심사기준에 저희가 지금 징계를 받거나 한 내용들도 포함……

○김승수 위원 징계는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게 질질 끌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단체장이나 이분들한테 이런 문체부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해태하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연임 심사할 때 불이익으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규칙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회랑 협의해서 그 징계대상에 이 내용까지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법적 회신 기한을 넘긴 건들이 전체의 24.3%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기존 제재수단들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이제까지는 저희가 재정,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이 법안이 개정돼서 재정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재정제한 도래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재를 한 곳은 없고요. 향후 일정에 맞춰서 첫 번째 도래하는 기간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은, 도래하는 기간 이후에 바로

다음 분기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간에 조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은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기간 단축에 따른 절차상 하자를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짚어 봤으면 합니다.

현재 징계사건 처리에 통상 이삼 개월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징계 절차 단계별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김영일 체육단체 징계위원회가 워낙 다양한 규모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두 명, 정말 적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기간을 줄이는 게 각 체육단체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실제로 회신현황을 보면 기간 내에 회신한 건이 상당 부분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차관님, 실제로 혹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이 도리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징계취소의 빌미가 되지 않는지 그 점은 짚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통상 두세 달이라 하더라도 또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체육단체라는 데가 거기서 두 달의 기간 안에,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조사해서 처리하는 데 두 달 가지고 부족하다. 지금 현재는 90일인데 두 달, 거기다가 연기해서 30일……

저희들끼리도 내부 토론해서 이 정도면 체육단체 규모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사건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다. 오히려 너무 길게 해 두니까 더 늘어지는 문제 때문에 압박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그걸 더 재촉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진선미 위원 저도 그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례들이 다른 법들에도 있을 텐데요, 조직들에. 저는 30일로 하는 것 조금 이례적인 느낌이 있어서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 다른 조직들이나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징계와 관련된 것들을 30일로 한 게 있는지가 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0일이 아니라 연장 가능한 날수가 3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90일 플러스 30일이었는데……

○소위원장 조은희 지금 60일 플러스 30일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지금 진선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보완요구, 재조치요구에 대한 것.

○진선미 위원 예, 보완요구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잖아요?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30일 기준은 사실은 되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런 기한을 30일로 둔 예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다른 법에서.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이것도 60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진선미 위원 저는 최소한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참고한 사례가 있나요? 그걸 여쭙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답이 어려우시면 넘어가서, 끝날 때까지 확

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참고한 사례라기보다는 저희 내부 토론에서 이미 조사했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30일만 해도 재조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 내부 토론에서 그렇게 했다고…… 어떤 선례를, 다른 사례를 참고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저도 필요한 문제는 신속한 종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일로 정부가 하자는 건데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검토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30일도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 문제는.

○소위원장 조은희 진선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미 위원 저는 그래도 이 기한은 전체적인 부처에서 유사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저는 이 소위에서는 전부 합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진선미 위원 저희가 이걸 결정하지 말고 혹시 참조 사례가 있는지를 끝날 때까지……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보시고요 진중오 의원안을 심의할 동안 찾아보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그러면 진중오 의원님 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일 진중오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4페이지입니다.

진중오 의원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연달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내부 징계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셀프 징계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감사원이 조사 중인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사 또는 수사 시 징계 절차를 중지하고 있는데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의 경우에는 조사 통보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체육단체 등에 수사개시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민간영역까지 수사기관이 수사개시 또는 종료 통보를 하는 방안은 그 입법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모든 징계 절차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각 사안별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위해 일부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 중지 시 그 기간이 각 기관의 징계 기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진중오 의원안의 두 번째 내용은 대한체육회 등의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문체부장관으로, 체육단체 임원의 경우에는 그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등으로 징계 권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 등의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지난번 소위에서는 IOC 올림픽현장에 따른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내용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체육단체 수사·조사 시 체육단체의 징계를 중지하는 내용으로 진중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중대범죄 사건처럼 신속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징계 절차 중지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수정안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 수정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징계권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셨지요? 안 하셨어요, 징계권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징계권 이관에 관한 것, 아까 신중검토 얘기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하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권한 이관과 관련하여 진중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단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징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 중이고 전문위원실 검토같이 임원 징계 권한을 문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삭제해 희망합니다.

또한 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 전부의 징계 권한을 체육회·장애인체육회로 상향하는 것은 인력, 예산에 한계도 있고 그리고 체육단체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도 법상 체육단체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징계 문제도 대한체육회로 상향해야 되는 논리적인 모순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현행 조항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노종면 위원 기본적인 것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체육단체가 봐주기 징계를 하면

셀프 징계가 돼서 그걸 막으려는 전반적인—앞에서 논의했던 게—, 그다음에 스포츠윤리 센터가 추가 징계를 못 하나요? 체육단체의 징계가 나오면 그다음 징계는 못 하도록 돼 있나요? 그래서 중지시키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의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논의의 배경이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아까 자정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체육단체의 징계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으로 권고가 와서 대한체육회로 문체부가 통보를 해서 이미 대한체육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또 시도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미 갖추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처럼, 더군다나 체육단체, 자율성 있는 단체의 문제를 문체부장관이, 국가기관이 징계하는 것은 IOC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요. 이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연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미 자정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5번의 스포츠윤리센터 수사·조사 시 체육단체의 징계 중지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라는 설명인가요? 6번은 6번대로 그렇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부분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데 단체들이 그냥 가볍게 빨리 징계를 끝내 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노종면 위원 그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체육단체들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종면 위원 그것 못 하게 됐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은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 문제라든가……

○노종면 위원 아니, 권익위가 하위단체에서 못 하게 하고 상급단체에서, 대한체육회가 하도록 권고해서 그렇게 시행한다면서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사안이 다른 거예요?

○진선미 위원 예, 진중오 의원안이 2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앞엿것이 충돌되는 것 같아서 여쭙보는 거예요.

개별 종목 단체에서 자체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익위가 대한체육회가 하라고 권고해서 그걸 수용기로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체육단체의 임원에 관한 것만 그렇습니다, 임원. 선수·지도자 문제 이런 것은 체육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 관한 것만 상급단체로, 그래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설명이 명확하면, 알아듣기 쉽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공부 한 번 더 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체육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하고 조사를 마쳤을 때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으며 통보한 뒤에도 센터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수정안에? 해 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조은희 국장님이 끄덕끄덕하셨어요.

그런데 차관님, 그러면 어떤 사건의 조사개시를 통보할 것인지 기준이 없어서 징계 중 지 여부가 결국 센터 판단에 전적으로 달리게 됐는데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체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부분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윤리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되게 되면 가이드를 만들어서 법사위 통과되기 전에 마련될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윤리센터는 신고 접수와 조사만으로 업무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사건마다 통보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 진행, 승인까지 하게 되면 감당이 되겠냐는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지침을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조은희 그다음에 개정안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임원의 징계권을 문체부장관에게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앞서 논의된 정부 개입 여부가 있어서 현재의 요구권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를 체육회가 관할하도록 하는 부분은 민간단체끼리의 관할 부분인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체육단체가 수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체육회의 업무와 인력과 예산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대상 체육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소위원장 조은희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체육회가 시행 중인 징계관할권 상향도 전관과 규정에 근거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소위원장 조은희 그런데 이걸 법률에 근거를 두는 편이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권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이번엔 입법화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정부 측 의견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차관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물론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체육회와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그런 다른 주체들이 대등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체육회랑 장체회가 모든 체육단체를 규율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징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미 단계별로 해서 임원들은 상향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아예 함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김영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법안소위 할 때 발의하신 의원께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직접 다시 재발의하시겠다는 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하는데……

○전문위원 김영일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5번 부분만 일부 수정해서 통과하도록……

○소위원장 조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안은 현재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광진흥법 제48조의2를 삭제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재원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전체적인 제정안의 구성 체계를 보시면 동 제정안은 총 5개 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공청회가 있었고 공청회에서는 후원 및 기부금 관련 조항 관련해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각 위원들로부터 별도의 제정법 신설 필요성,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 후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도시의 후원 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 및 정의 부분부터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규정과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조 목적 규정 중에서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리고 그 밑의 제2조 정의 규정 중에서 제정안

은 지역축제를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축제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호·3호 중에서도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제5조는 문체부장관이 3년마다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문체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 홍보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5조제1항 중에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제7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6페이지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 절차를 명시하도록 일부 보완하고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문화관광축제의 정의와 지정 절차, 전담조직, 후원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축제 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을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축제는 지역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축제 정책의 독립적 추진 체계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축제 재원을 투명화, 다변화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감하여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제정안의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하위법령 위임 등과 관련하여 제2조, 제7조까지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공청회 때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제가 공청회를 참여하지 않아서…… 궁금한 게 7페이지 정의를 좀 더 상세하게 바꾸어 주셨는데 이게 기존의 축제와 관련된, 전문가든 현장이든 이런 정의에 동의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의 근거나 관련해서 참고한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영일 일단 문체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었고요, 일단 제정안 자체는 비용 여부만 해 봤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축제를 정의하는 요소들, 역사·문화·예술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떤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에게 오픈된, 개방된 행사라는 취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의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혹시 참여하신 분의 의견을, 실무자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 이걸……

○소위원장 조은희 옆에 배석하신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관광정책관 강동진입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역축제에 관해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나 관리하는 부분들이 2일 이상의 축제 그다음에 지자체가 비용을 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진선미 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요소들을 잘 정리해서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들.

○노종면 위원 여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이 되는 축제의 종류가 법조문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 그런데 예비축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부분이 지금 이 안에는 빠져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는 예비축제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의견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소위에서 제가 의견을 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비축제에 관한 조항을 한 조항 포함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안을 준비해 오셨나요? 저희 보여 주시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면 자료를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은희 예, 그래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지금 문화관광축제도 그렇고 글로벌축제라는 명칭도 그렇고 이 예비축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비글로벌축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행정적으로 지정해 온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규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새로운 지원 대상의 범주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비글로벌축제라는 게 작년에 논의돼서 올해 처음 시행됐어요. 그렇지요? 없던 게 다음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법률 안에다가 행정적으로 만든 명칭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금 지역축제, 예비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 사실 예비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냥 쓴 용어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를, 지역축제가 지금 126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문화관광축제가 20개, 문화관광축제가 47개, 글로벌축제가 6개에다가 예비글로벌이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단계별……

지역축제를 저희들이 다 육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시도에서 운영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문화관광축제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문화관광축제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진 것은 예비축제로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에서 3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승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도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법에서 정해지게 되면 나중에 커다란 어떤 변동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체제로 가면서 경쟁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비글로벌축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용어로만 쓴 거고, 그걸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비축제에 관한 조항은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노종면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행정을 그냥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예비글로벌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국회의원이 저예요. 아주 극소수만, 문화관광축제랑 글로벌축제가 이원화해서 글로벌축제 올해 6개로 늘었지만 작년까지 3개 했잖아요. 풀랑 3개. 문화관광축제 수십 개, 20여 개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는 그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문체부가 수용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범주를. 그런데 그걸 한 1년 해 보고 그냥 말자.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법에다가 어떤 용어를 규정할 때…… 승강제 좋아요, 그런 시스템을 넣는 거에 대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특정할 이유가 있는가를 여쭙본 게 하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용어를 상당 기간 쓸 거라고, 용어가 바뀌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해서라도 죽 쓰겠다고 하는 것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문화관광축제 앞에 예비 왜 부쳐요? 수많은 지역축제 가운데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예비로라도 관리해서 문화관광축제 수준으로 올리고, 예비글로벌이 이번에 생긴 것하고 똑같은 이유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문화관광축제는 몇 년 더 해 왔으니, 죽 해 왔으니 그대로 두고 예비글로벌축제는 취지야 이렇든 저렇든 1년밖에 안 했으니까 빼고, 이 논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 보이고 너무 단순해 보이고 너무 편의적으로 보이고. 제정법을 만드는데 이게 그런 자세로 임해서 되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우리 7조까지 하는 건데 8·9조 얘기를 하고 계셔 가지고, 선행학습이 필요한……

○**소위원장 조은희** 노종면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는 조항이 7조까지 이후의 얘기라서 정부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아직 못 듣고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종면 위원** 7조까지밖에 안 했나요?

○**소위원장 조은희** 저는 먼저 좀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먼저……

○**진선미 위원** 그래요?

○**노종면 위원** 나는 안 나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8조·9조에 있어요, 9조부터 11조에.

○**노종면 위원** 안 나와 가지고…… 입장을 왜 말씀을 안 하시지 하고 물어본 건데,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 7조까지라서. 지금 마음이 급하셔요.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일 그러면 7조까지는 정리가 된 걸로……

○김승수 위원 아니지.

○소위원장 조은희 아니요, 김승수 위원님 의견 들어보셔야지요.

○전문위원 김영일 그러면 8조……

○진선미 위원 위원님, 7조 안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이 얘기는 9조·10조·11조 이때 하는 거거든요.

○김승수 위원 나는 기본적으로 공청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제정법으로 갔을 때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요?

굳이 기존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걸 법제화해서 제정법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문화관광축제, 지역축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것, 문체부에서 고른 것들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가 이 법을 제정하면 추가적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 와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그런 근거조항이 들어가나요, 이 법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역축제는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1266개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관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조항으로 하기……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규정했을 때하고 또 정책적으로 됐을 때하고 법으로 됐을 때 실제 지자체에서 더 좋아지는 게 뭐예요? 더 도움을 받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단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후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93%가 공적자본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시행령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지역축제마다 후원을 유치해 가지고 재정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게 되면 그중에서는 상당히 세계적인 축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나올 수 있고……

○김승수 위원 어차피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해서 이 법을 제정할 때도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아니면 꼭 문화관광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광진흥법에 지정하면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그래도 축제가 관광산업 중에서도 하나의 분류로 될 정도로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더 안정

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두 조항보다는 법체계를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저희들은……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 법이 제정되면 이 법의 어떤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기획예산처로부터 더 추가적으로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면 지금 지방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니에요. 돈 더 주는 건 없으면서 법을 통해서 더 제약하고 규제하고 오히려 문체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만 더 강화시키는 것 같으면 실제로 지금 문화관광축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구속과 제약만 더 많이 받는 거고.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에 의해서 평가나 선정이 되면 좀 덜하게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자의적으로 선정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문체부 눈치만 더 보고 그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제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때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서 문체부가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셨겠지만 제대로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청회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노종면 위원님이 예비 글로벌축제를, 본인이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차관님께서 ‘예비 글로벌축제는 필요 없고요’ 이런 유의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소위는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합의를 해서 갔으면 싶은데 지금 너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진선미 위원님도 좀 말씀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제가 이해한 바로는 두 분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쨌든 이 법안의 특성은 이미 1300개에 다가가고 있는 지역축제들을 그중에 잘되는 것들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력을 높여서 노력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면서 이 문화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조로는, 차관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정법이 새로 생기면 지금은 47개지만 1300개 중에…… 또 공정한 심의위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진선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임의로 자의성이 배제될 수 있다,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47개보다 훨씬 더 많이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이름을 막 정해 놓는 거예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애매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산을 쓸 수 없게 되거나 그런 식의 사업이 발굴이 안 돼 가지고 불

용이 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정상의 편의는 있을 수 있지만 축제라는 것은 늘 창의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해진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축제들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할 수 있다, 저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예비 축제라는 게 기존의 법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서 축제가 되기 전에 몇 년을 지켜보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중간 단계인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러면 굳이 예비 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분리해서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예비 글로벌축제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예비 축제는 모든 축제의 유형에 들어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한 이삼 년 더 지켜보고 위로 올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소위원장 조은희 진선미 위원님이 오히려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몇 가지의 궁금증을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제를 활성화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이득이 되는 게 뭐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입장 방향이 명확해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추가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잠시 5분 동안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직장 등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때만 하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수정의견을 읽어 드리면 ‘선수단 구성·자격·고용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만 명확하게……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면 조례의 효력이 구역에 있어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구시 조례로 정하면 대구시의 직장운동부도 말할 것 없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대구시의 산하기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대구시에 있는 중앙공공기관의 직장운동부는 대구시의 조례가 적용되는 거냐 아닌 거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규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걸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단과 법인과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조

레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방금 차관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운동경기부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운동부는 그 조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거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항의 전단에 보시면 실제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후단에 있는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경기부에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율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로 하든 말든. 왜냐하면 똑같은 직장운동부가 시군에서 하는 거는 조례에 적용이 되고 똑같은 데는 그 규정하고 별개로 하고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율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대구시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저촉 우려에 대해서 문체부는 행안부에 의견을 전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했는데 행안부에서 아무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의견을 받았어야지요. 이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받든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은 의견이 오지 않으면 이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행정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은희 대전의 경우는요? 제가 대전도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와 같이 유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5항 단서를 보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만 예외로 두고 있어서 이게 지자체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 안 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대전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는데요. 이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노사협의회 같은 성격이 있어서 진흥관리위원회처럼 그걸 대체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보았고.

첫 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흥관리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해 달라는 얘기라서, 한 군데 빼고는 진흥관리위원회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서 사실 저희는 수용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대전·대구 빼고는 다 합의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은 명시적으로 했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협의회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보았고요. 다른 곳은, 명시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꼭 제시한 곳은 서울시만 있어서 사실은 이 정도는 수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자체가 100%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조은희 노종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계원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경우는 오히려 10조 5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조 5항의 운영과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가 보다 좀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포괄적 위임 소지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으로 정하고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위임의 대상과 범위도 정해준 거지요. 이걸 수정의견으로 위임의 대상을 선수단 구성과 자격·고용 등 이렇게 해서 정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런데 조계원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연간 운영계획, 지도자, 선수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보수 책정, 우수 선수 선발,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에 인권전문가를 두기로 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지요.

○김승수 위원 이견이 많은 부분은 보류해서 다시 추후 심사하고 이견이 없는 것들만 빨리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노종면 위원님 어떠세요?

○노종면 위원 조계원 위원님 개정안의 취지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논의가 확대된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어떤 단체건 정확한 시스템, 운영 체계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맞고, 특히나 스포츠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수 인권 보호 문제 이런 것들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법 개정 노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다만 법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것저것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답변을 들어 보면 이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셨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공공기관이 포함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중앙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적어도 공적 영역에 있는 것들은 비슷한 체계로 법문이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직장은 해당 기준을 정관에 반영한다든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규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영일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자체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인 법안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

이고요. 특히 지자체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정리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걸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면……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행안부 의견도 수렴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조은희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진짜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신설할 경우에 이 맥락을 가지고 따지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야 직장운동부를 새롭게 신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직장운동부 설치가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조계원 위원 기간을 두고 부칙으로 처리해야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이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조은희 의원안을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조은희 의원님 안은 아까 전에 정리하신 대로 수정의견은 하되 중간에 징계위원회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의견대로 포섭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금 더 조정해서 반영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안은 전문위원님 다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일 그때 논의하셨던 게 보완요구에 대해서 90일을 30일로 수정하는 부분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조계원 위원 90일을 60일……

○진선미 위원 아니, 여기는 제가 이의제기한 거예요.

○소위원장 조은희 지금 정부 측에서 보완요구·재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30일이 아니고 60일로 단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이거는……

○김승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90일을 30일로 하고 앞에 조치요구처럼 30일 연장 가능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위원장 조은희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제가 전문위원님 쪽에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설명을 전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징계 조치상으로는 조치요구 단계에서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보완요구·재조치 요구라는 게 거의 없대요, 사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체육단체가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체 제도로 여기에만 도입된 제도라는 거지요, 이 보완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면 90일, 그러니까 저의 우려는 애초에 90일, 90일이었는데 갑자기 60일, 30일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소위원장 조은희 너무 타이트해졌다 그런 우려를 하셨다는 거지요?

○진선미 위원 예, 그래서 90일·90일, 60일·60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굳이 제 의견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매우 이례적인 거라

서……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경우 30일로 연장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부 측? 30일로 하되 필요할 경우 30일 연장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30일 연장을 없애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셔서 공무원 징계령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거기 보면 공무원 징계의결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돼 있고 보완요구·재조치요구 관련 규정은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에다가 개정이 되더라도 이미 연장 30일이 있고 또 재조치요구도 30일이 되더라도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 정부 의도대로 30일로 유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김승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이 법안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종오 의원님안 전문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일 진종오 의원안 5번에 징계조치를 중지시키는 안은 수정의견대로 반영을 하고, 6번 징계권한을 상향 이관하는 거는 일단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도 있고 또 서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 차관님, 앞서 문화관광축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법까지 해서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야 돼요. 1차관 소관이지만, 청년문화패스 내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7900억 정도……

○김승수 위원 올해 360억 정도에서 무려 8000억 잡힌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조은희 22배 늘리셨지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8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00억대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냥 법으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명분이 서지요. 이게 일회성 문화관광패스에 7000억, 8000억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문화관광축제 법까지 만들어 가지

고 지원하는 데 예산을 몇 천억 올려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편성하고 법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은희 사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사실은 이 청년문화패스 여기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게 낫지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조은희 차관님, 저희들이 이 제정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제정법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체계 문제나 이런 것을 논외하고도 말씀이지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1000억으로 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7000억으로 한다든지 이런 의지가 없이 청년문화패스는 22배 늘리면서, 대상은 33배 늘리면서 이것 제정법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서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하겠다,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요.

예산안 정부에 넘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일회성 소위도 열겠습니다. 이 법안을 위한 원타임 소위도 열겠다고요.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조계원 위원 올해 예산은 이미 정해져 버렸는데……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니까 정부안이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김대현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석기 김승수 노종면 이정문 조계원 조은희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전문위원 김영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체육국장 이선영

정책기획관 이준호

관광정책관 강동진